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기 게양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70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기 게양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3. 5. 11.
3. 회부연월일 : 2023. 5.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육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육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국기 게양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개정안은 국경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등은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게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한 직접강제¹⁾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외국기의 게양 금지)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육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빈 방문, 국제경기 및 국제회의 개최,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의 외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게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직접강제”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외 한 종류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시장등은 제2항의 명령을 받고도 외국기를 계속하여 게양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벌칙)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명령에 불응하여 외국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하는 날로서, 현행법은 민족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여²⁾ 기념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³⁾

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특히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임에도⁴⁾,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를 게양할 것임을 밝혀⁵⁾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음.

개정안은 국경일에 특정 외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제헌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경일의 취지를 훼손하여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나, 특정 국기의 게양을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표현의 자유⁶⁾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헌 헌법은 1948년 6월 30일 상정, 7월 12일 의결, 7월 17일 공포되었음.
- 5) 「현충일 육일기 내건 의사 "제헌절·광복절에도 똑같이 할 것"」, 아시아경제, 2024.6.7.
- 6)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행위’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음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 결정), **국경일에 특정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비록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응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은 시장등의 명령에 불응하여 외국기를 제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액수가 적정한지 위법의 정도, 처벌 수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그 정도가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⁷⁾

행정안전부는 특정국가의 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외국인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외국기 게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이며, 특정 국가의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해외 유사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거나 과태료 부과 없이 외국기 제거만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83)’ 고 판시하였음.

외교부는 특정 국가의 국기 게양금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